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97

제출일자 : 2017. 12.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26호, 시행 2016.7.7.)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71호, 시행 2017.3.30.)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
- 나.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조항 추가(안 제3조의2)
- 다.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에 대한 조항 추가(안 제9조의2)
- 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련 지도·감독, 위탁의 해지 또는 취소 등에 대한 조항 추가(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 마.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대한 조항 추가(안 제1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7. 10. 16. ~ 11. 4.(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의견 제출 0건)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을 “하는 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을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5호 중 “달성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심의회”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0조에 따라”를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상단” 을 “윗부분까지”로 하며, 같은 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대구광역시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사용간판 또는 디지털광고물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위한 경우나 해당 광고 외에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 있는 내용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표시금지 사항

②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그 밖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호 중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전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과”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또는”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3항”을 “영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호선한다”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민협의회에게 그 변동내용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4호 후단 중 “제7조의 규정”를 “제7조제2항”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등을 적법하게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하고,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2호 중 “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의 관련”을 각각 “디자인·조명·청소년·광고물등 또는 각 이와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을 “영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네온류 및 전광류의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전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의”를 “네온류·전광류 사용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5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제16조의 제목 중 “위탁 및 관리”를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조례”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지도 · 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 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 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3(위탁의 해지 또는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 · 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2항” 을 “영 제40조제2항” 으로 하고, “관계자가” 를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이” 로 하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군에 갖추거나 그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제거한 때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게 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옥외광고업” 을 “옥외광고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을 “제11조제7항” 으로 하고,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옥외광고사업자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말”을 “12월말”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여 그를 공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12월”을 “11월”로 하며, 같은 조제6항 후단 중 “산출근거를 사전에”를 “산출근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로 한다.

별표 1부터 5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8조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m^2$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m^2$ 이하		20만원
- $2.1m^2$ 이상 $3.0m^2$ 이하		25만원
- $3.1m^2$ 이상 $4.0m^2$ 이하		30만원
- $4.1m^2$ 이상 $5.0m^2$ 미만		40만원
2) 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m^2$ 이상 $6.0m^2$ 이하		50만원
- $6.1m^2$ 이상 $7.0m^2$ 이하		60만원
- $7.1m^2$ 이상 $8.0m^2$ 이하		70만원
- $8.1m^2$ 이상 $9.0m^2$ 이하		80만원
- $9.1m^2$ 이상 $10.0m^2$ 미만		90만원
3) 면적 $10m^2$ 이상 $20m^2$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m^2$ 이상 $12.0m^2$ 이하		100만원
- $12.1m^2$ 이상 $14.0m^2$ 이하		120만원
- $14.1m^2$ 이상 $16.0m^2$ 이하		140만원
- $16.1m^2$ 이상 $18.0m^2$ 이하		160만원
- $18.1m^2$ 이상 $20.0m^2$ 미만		180만원
4) 면적 $20m^2$ 이상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가산금액($10\text{만원}/m^2$)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m^2$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m^2$ 이하		20만원
- $2.1m^2$ 이상 $3.0m^2$ 이하		25만원
- $3.1m^2$ 이상 $4.0m^2$ 이하		30만원
- $4.1m^2$ 이상 $5.0m^2$ 미만		40만원
2) 연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m^2$ 이상 $6.0m^2$ 이하		50만원
- $6.1m^2$ 이상 $7.0m^2$ 이하		60만원
- $7.1m^2$ 이상 $8.0m^2$ 이하		70만원

	- 8.1m ² 이상 9.0m ² 이하 -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80만원 90만원
3) 연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 10.0m ² 이상 12.0m ² 이하 - 12.1m ² 이상 14.0m ² 이하 - 14.1m ² 이상 16.0m ² 이하 - 16.1m ² 이상 18.0m ² 이하 - 18.1m ² 이상 20.0m ² 미만		
4) 연면적 20m ² 이상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가산금액(10만원/m ²)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m ²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 0.5m ² 이하 - 0.6m ² 이상 1.0m ² 이하 - 1.1m ² 이상 2.0m ² 이하 - 2.1m ² 이상 3.0m ² 미만		
2) 연면적 3m ² 이상 5m ²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 3.0m ² 이상 3.5m ² 이하 - 3.6m ² 이상 4.0m ² 이하 - 4.1m ² 이상 4.5m ² 이하 - 4.6m ² 이상 5.0m ² 미만		
3) 연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 5.0m ² 이상 6.0m ² 이하 - 6.1m ² 이상 7.0m ² 이하 - 7.1m ² 이상 8.0m ² 이하 - 8.1m ² 이상 9.0m ² 이하 -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4) 연면적 10m ² 이상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가산금액(10만원/m ²)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m ²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m ² 이하 - 2.1m ² 이상 3.0m ² 이하 - 3.1m ² 이상 4.0m ² 이하 - 4.1m ² 이상 5.0m ²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2) 연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3) 연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4) 연면적 20m ² 이상 50m ²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5) 연면적 50m ² 이상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0만원+가산금액(10만원/m ²)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연면적 5m ² 이하 - 연면적 6m ² 이상 10m ² 이하 - 연면적 11m ² 이상 15m ² 이하 - 연면적 16m ² 이상 20m ² 이하 - 연면적 21m ² 이상	.70만원 +연면적 21m ² 를 초과 하는 면적의 1m ²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70만원+가산금액(5만원/m ²)

2) 공중에 띠우는 애드벌룬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5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가산금액(5만원/개)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연면적 $5m^2$ 이하		30만원
- 연면적 $6m^2$ 이상 $10m^2$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m^2$ 이상 $15m^2$ 이하		50만원
- 연면적 $16m^2$ 이상 $20m^2$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m^2$ 이상	.70만원+연면적 $21m^2$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70만원+가산금액(5만원/ m^2)
2) 교통안내소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m^2$ 이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m^2$ 이상	.160만원+연면적 $11m^2$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60만원+가산금액(10만원/ m^2)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m^2$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1.0m^2$ 이하		10만원
- $1.1m^2$ 이상 $2.0m^2$ 이하		20만원
- $2.1m^2$ 이상 $3.0m^2$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m^2$ 이상 $5m^2$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3.0m^2$ 이상 $4.0m^2$ 이하		35만원
- $4.1m^2$ 이상 $5.0m^2$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m^2$ 이상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 산한 금액	50만원+가산금액($5\text{만원}/m^2$)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0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p>가. 관계 법규(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p>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자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 안점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p>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점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를 포함한다) <p>※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p>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이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p>※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p>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일반 벽면 이용 간판(2)를 제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6m^2$ 이하 - 면적 $6m^2$ 초과시 $1m^2$마다 더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원 1,000원 	
2) 시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m^2$ 이하 - 면적 $20m^2$ 초과시 $1m^2$마다 더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5m^2$ 이하 - 연면적 $3.5m^2$ 초과시 $1m^2$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원 500원 3,000원 	
다.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 1)과 같음		
라.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m^2$ 이하 - 연면적 $10m^2$ 초과시 $1m^2$마다 더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m^2$ 이하 - 연면적 $10m^2$ 초과시 $1m^2$마다 더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띠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m ² 이하 - 연면적 1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 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타. 입간판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m ² 이하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m ² 이하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1,000원
하. 벽보(50매당)		2,500원
거. 전단(1,000매당)		2,5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p>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p>	<p>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 게시대는 제외)</p>
---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2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시조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	- 연면적 $6m^2$ 이하 - 연면적 $6m^2$ 초과 $20m^2$ 이하 - 연면적 $20m^2$ 초과시 $1m^2$ 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m^2$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m^2$ 이하 - 연면적 $3.5m^2$ 초과 $10m^2$ 이하 - 연면적 $10m^2$ 초과시 $1m^2$ 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50m^2$ 이하 - 연면적 $50m^2$ 초과 $70m^2$ 이하 - 연면적 $70m^2$ 초과시 $1m^2$ 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m^2$ 이하 - 연면적 $10m^2$ 초과 $20m^2$ 이하 - 연면적 $20m^2$ 초과시 $1m^2$ 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높이가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m^2$ 초과 $40m^2$ 이하 - 연면적 $40m^2$ 초과시 $1m^2$ 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기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2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국외광고를 통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광고주(국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판권자		변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부	성0	상	업	전	주	어	중	수	규	표	표	국0	국0	주	전	부	부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점검 -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 사업계획서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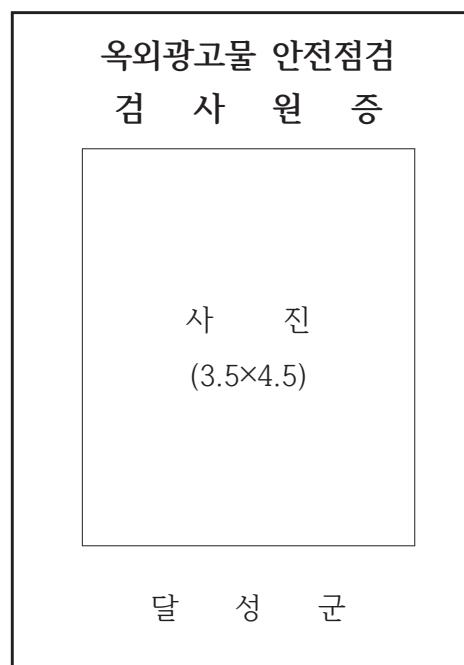
년 월 일

달 성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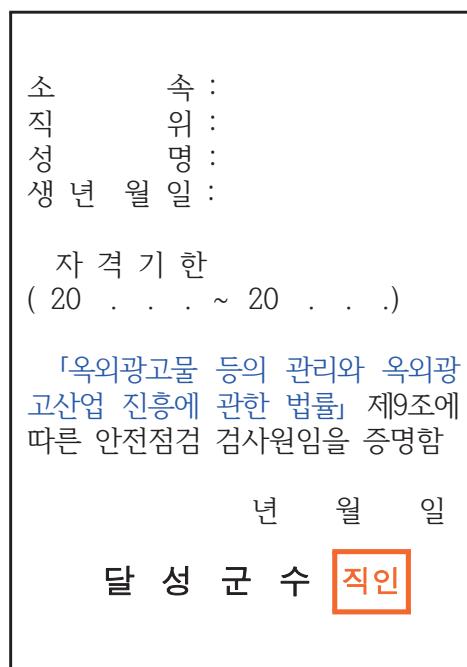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비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二〇一九年

검사자 수속

직위(직명)

설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훠,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
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정 신·구 대조표(전문)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u>」 및 「<u>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같은 법 시행령 및 「<u>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u> ·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u>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 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u>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u>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u>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p>5.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달성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u>(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p> <p>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u>제10조에 따른</u>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p> <p>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u>상단</u>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p> <p>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p>	<p>5.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u>(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p> <p>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u>제11조에 따른</u>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p> <p>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u>윗부분까지</u>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p> <p>2. 「<u>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이하 “<u>대구광역시조례</u>” 라 한다)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사용간판 또는 <u>디지털광고물 <신설></u></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p>
<p>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7.10)</p>	<p>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7. 10.></p>

<p>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암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암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p>
	<p><u>제3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u></p> <p><u>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위한 경우나 해당 광고 외에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2.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u></p>

	<p><u>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 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u></p> <p><u>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u></p> <p><u>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u></p> <p><u>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 있는 내용</u></p> <p><u>다. 그 밖에 군수가 공중도덕이나 사 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 한 표시금지 사항</u></p> <p><u>②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그 밖 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 바에 따른다.</u></p> <p><u>[본조신설]</u></p>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p>1. 타사광고(<u>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 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u>) 를 표시하는 광고물등</p> <p>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p> <p>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 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p>	<p>1. 타사광고(<u>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 을 말한다</u>)를 표시하는 광고물등</p> <p>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p> <p>3. <삭 제></p>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

<p>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u>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빛이 절멸하거나 화면전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과</u>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u>가로형간판</u>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p>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u>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를 또는</u>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벽면이용 간판</u>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p>제6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 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 · 모양 · 크기 ·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 · 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6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 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 · 모양 · 크기 ·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 · 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u>영 제27조제3항에</u>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 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p>제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u>영 제27조제4항에</u>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 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u>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	--

<p>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u>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u>군수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민협의회에게 그 변동내용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p> <p>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p> <p>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구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p>	<p>제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p> <p>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p> <p>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구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p>

<p>쳐 · 행정절차법 ·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지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u>제7조의 규정</u>을 준용한다.</p> <p>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p>	<p>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지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u>제7조제2항</u>을 준용한다.</p> <p>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p>
<p>제9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군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등을 적법하게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p>

	<p><u>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u></p>
	<p><u>제9조의2(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u> <u>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p><u>[신설]</u></p>
<p><u>제10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u>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광고물등 또는 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p><u>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u>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u>심의위원회</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광고물등 또는 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광고물등 또는 각 이와 관련된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p>경험이 풍부한 <u>자</u></p> <p>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회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④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p>	<p>경험이 풍부한 <u>사람</u></p> <p>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회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④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p>
--	---

<p>청을 할 수 있다.</p> <p>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11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u>네온류 및 전광류의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전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의</u>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p>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p>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p>	<p>할 수 있다.</p> <p>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11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u>네온류 · 전광류 사용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u>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p>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p>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p>
---	--

<p>의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u>제17조</u>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p><u>4.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3호까지</u>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u></p>	<p>제1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u>제19조</u>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p><u>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신설></u></p> <p><u>5.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4호까지</u>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u></p>
<p>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실 	<p>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실

<p>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 건축 ·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p>	<p>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 건축 ·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p>
<p>제1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p> <p>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p> <p>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p>	<p>제1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0.></p> <p>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0.></p> <p>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p>

<p>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p>	<p>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p>
<p>제15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7.10)</p> <p>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5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p> <p>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7.10.></p> <p>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6조(현수막 지정개시대의 <u>위탁 및 관리</u>)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p>	<p>제16조(현수막 지정개시대의 <u>위탁 등</u>)</p> <p>① 군수는 <u>대구광역시조례</u>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개시대의 효율적인 관</p>

<p><u>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계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탁절차는 제1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에 따른다.</u></p> <p><u>② 자연재해(강풍, 태풍 등) 등으로 안전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에는 계시기간과 관계없이 재해 예상기간 동안 임의로 현수막지정계시대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u></p>	<p>리를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계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탁절차는 제1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에 따른다.</p> <p>② 자연재해(강풍, 태풍 등) 등으로 안전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에는 계시기간과 관계없이 재해 예상기간 동안 임의로 현수막지정계시대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p>
	<p><u>제16조의2(지도 · 감독 등)</u></p> <p><u>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 · 점검을 하여야 한다.</u></p> <p><u>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 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 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제16조의3(위탁의 해지 또는 취소 등)</u></p> <p><u>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u></p>

	<p><u>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u></p> <p><u>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u></p> <p><u>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u></p> <p><u>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u></p> <p><u>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u></p> <p><u>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u></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제1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p> <p>③ 군수는 <u>제2항</u>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u>관계자가</u>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7.10)</p>	<p>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p> <p>③ 군수는 <u>영 제40조제2항</u>에 따라 광고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u>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이</u>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7. 10.></p>
	<p><u>제17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u>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군에 갖추거나 그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u>②</u>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제거한 때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게 그를 징수하여야 한다.</p>
<p>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u>제19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u>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p>	<p>제19조 (<u>옥외광고사업</u>의 등록 관리 등) <u>①</u> 군수는 <u>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경</u></p>

<p><u>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u></p> <p>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u>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u>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u> 	<p><u>우에는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u></p> <p>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u>옥외광고 사업자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게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u>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u>
<p>제20조(<u>옥외광고업</u>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u>옥외광고업</u>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매년 <u>1월말</u>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u>해당 연도</u>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p>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u>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u>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p>	<p>제20조(<u>옥외광고사업</u>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u>옥외광고사업</u>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매년 <u>12월말</u>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u>다음 연도</u>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p>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p>

<p>을 받을 수 있다.</p> <p>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p> <p>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7.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p>제21조(교육의 위탁 등)</p> <p>① <u>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2조제3호에 적합해야 하며,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여 그를 공고에 포함</u></p>	<p>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p> <p>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p> <p>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7.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p>제21조(교육의 위탁 등) ① <u>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여 그를 공고에 포함</u></p>
---	---

<p><u>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u>,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u>옥외광고사업</u>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u>11월</u>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교육을 위탁받은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0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⑥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금액과 <u>산출근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u> 공고하여야 한다.</p> <p>⑦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p>	<p><u>함시켜야 하며</u>,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u>옥외광고사업</u>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u>11월</u>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교육을 위탁받은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0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⑥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금액과 <u>산출근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u> 공고하여야 한다.</p> <p>⑦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p>
---	---

<p>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p>	<p>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p>
<p>제22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p>② 수수료 금액의 산정은 면적·길이의 경우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p> <p>③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④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제22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p>② 수수료 금액의 산정은 면적·길이의 경우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p> <p>③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④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관리에 관한사무 등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관리에 관한사무 등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0조, 제49조, 제50조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다. 그 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계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계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가.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